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2021. 8. 23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패션클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 목 차 ▶

1. 직업성 질병자 범위 / 1
2.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10
3.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13
4.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조치 / 21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25
6. 원료 ·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28
7. 원료 · 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조치 / 32
8.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 및 방법 / 35
9. 시행일(부칙) / 36
10.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 38
1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 41
12. 관계법령상 개선 · 시정 명령사항 이행조치 / 43
13.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44
14. 경영책임자등의 책임범위 / 47
1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48

1 직업성 질병자 범위(안 제2조, 별표 1)

[시행령(안)]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 신경계장애 등의 급성 중독
2. ~ 12. (생략)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14. ~ 21. (생략)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생략)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가. 문제점

(1) 중증도 기준이 없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 재해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사업장 조사 및 처벌이 발생할 수 있음

- 질병자 범위를 유해인자에 따른 상병으로 규정하였을 뿐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짧은 휴식 및 치료로 회복(완치)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주관적 증상 호소에 의해 직업성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급성 중독’ 자체를 중증도가 반영된 질병 목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중독 증상을 보인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의 치료와 휴식으로 회복되는 경미한 사례가 더 많아 중증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실제로 [별표 1] 목록 중 두통, 현기증, 구역, 두근거림, 점막자극 등 상당수 증상*은 단시간 치료로 치유가 가능한데,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개인 감수성 차이에 따라 재해자가 증상을 호소할 경우 급성 중독 진단이 불가피 *해당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열거된 내용인데, 산재근로자가 급성 중독임을 자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열거한 예시적 증상에 불과하므로, 이를 동 시행령(안)에 여과없이 준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예시] 경미한 질병(증상) 사례

-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흡입(노출) 8시간 후 심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입원 했으나 2일 후 완전히 증상 호전, 입원 8일 만에 건강한 상태로 퇴원*
* 김정호 외(2000), 질소산화물의 급성 노출로 인한 폐 손상 1례,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2권제2호, p.302~309
- **(오존)** 오존가스 노출로 호흡곤란·두통 등 호소한 근로자 2명이 급성중독 증상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21.3)되었으나 증상이 경미하고 노출량 측정 결과 일상생활 중 자연노출량 정도에 불과
 - 작업장소 근처 오존가스 배출구가 존재하여 직접 노출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나 실제 노출량은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노출되는 수준임에도 당사자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진단 요구로 진행
- **(열사병)**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의 대기업 사업장은 다양한 보건관리조치 노력* 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유사 열사병 사례 다수 발생
*대형 선풍기 등 냉방기구 설치, 휴게장소 마련, 체온관리 위한 음료(얼음물) · 간식(아이스크림, 과일) · 의류(팔토시, 스카프 등) 지급, 작업량 · 시간 조정 등
 - 증상자 대부분 단시간 치료 또는 1~2일 휴식 후 회복하여 작업현장에 복귀
 - 이론과 달리 현장에서는 일사병과 열사병 구분이 불분명하고 단일 질병코드 진단

- 경미한 질병의 중대산업재해 포함은 중증의 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법률 취지와 맞지 않고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정의 규정 간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남
- [별표 1]의 기준으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와 질병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법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의 사고(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제3호 나다목) 정의가 법률 취지를 감안해 산안법보다 더 중한 재해로 중증도 조건을 설정한 것에 비하여 직업성 질병 목록만 중증도 기준이 부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고·질병 정의 비교 (법 제2조제2·3호)

구분		내용	중증도 기준
중대 산업재해	사고	동일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동일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 시민재해	사고	동일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동일원인으로 질병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증의 질병발생을 이유로 감독기관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수사해야 하는 불합리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경증이라도 중대산업재해 요건에 포함될 경우 감독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하여 과도한 조사 업무량 급증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

(2) 유해요인과 질병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요건으로 부적합하고, 유해요인 개념으로 제시된 업무장소 범위도 불분명해 경영책임자가 중대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음

- [별표 1] 제13호의 화학적 인자 숫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유해인자별 구체적인 질병명도 규정하지 않아, 어느 질병까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어 형사처벌 요건으로 부적절함
- 제13호에 해당되는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인자가 총 200종이 넘고, 제1~12호 및 제14~16호에 제시된 화학물질까지 중복 포함
- 반면 제13호의 화학적 인자 노출에 의한 질병명(급성중독)이 명확히 규정되지 못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

*급성 중독 정의(화학 물질이 짧은 기간 내에 생체에 작용하여 갑자기 질병 상태에 빠지는 현상)상 그 자체만으로는 질병명이라 하기에 불충분하고 구체적 질병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질병 목록 중 ‘중추신경계장해’(제1·11호), ‘자율신경계장해’(제11호), ‘위장 관계 질병’(제12호) 등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폭넓고 광범위하여 예측이 불가능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업무장소(유해요인)가 불분명하여 경영책임자의 관리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예방조치 수행에도 한계
 - 화학물질은 관계법령에 의해 취급·관리기준 및 예방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산소농도 부족 장소’(제22호), ‘덥고 뜨거운 장소’(제24호)는 업무장소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 내 해당 장소 구분이 불분명하고 적절한 재해 예방조치가 어려움

(3) ‘1년 이내에 3명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질병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될 수 있음

- 법률 및 동 제정안에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발생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그 기준이 불분명함
- 이에 따라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중대재해를 유발하였다는 전제로 경영책임자를 염별하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
 - 고용부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질병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하였음*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 참조

- 그러나 [별표 1] 목록의 질병이 모두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만 ‘1년 이내 3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건의료 종사자의 C형 간염(제17호)이 비직업적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경미한 수준의 ‘급성 중독’도 업무로 인한 발병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4) 한편,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사망자'에 속하는 질병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입법취지와 달리 뇌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가 포함될 수 있음

-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은 정부의 직업성 질병 선정 기준*인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않는데 이러한 질병사망까지 중대산업재해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 참조

-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은 개인 기저질환과 생활 습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발병경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짐
- 또한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고려* 할 때 만성질환을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법률 제정 시 법사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참조(정부 주요내용 설명자료에 발췌·소개)
- 특히, 사회보장 강화 취지로 완화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업무상 질병 불인정이 증가하고 채용이 위축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흔히 '과로사'로 표현하는 사망재해 대부분은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성질환 특성상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장 확대 취지로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인정기준을 완화함
- 만약 만성질환 사망자까지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건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이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엄격한 판정이 불가피해 업무상 질병 인정율이 감소할 수 있음

-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처벌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가족력 보유자, 기저질환자, 치료 경력 확인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직원 (종사자) 채용·계약 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나. 건의의견

(1) 직업성 질병에 대한 중증도 기준("6개월 이상 치료 필요")을 마련하고,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기 쉬운 경미한 증상은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함

법 제2조제2호 나목* 기준을 고려 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중증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법 제2조제2호 나목)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두통, 현기증, 구역,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증상의 호소만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당 문구 삭제

(2) 과도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제13호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고, 제22·24호에 해당하는 업무장소의 범위와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표 1]의 제13호는 매우 다양한 유해요인을 포괄하면서 구체적 표적 질병도 특정하지 않아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 요건에 부합하지 못함

화학물질 등 특정한 유해인자가 아닌 장소 개념의 유해요인은 더욱 명확히 그 범위와 특징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제22호)는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7.9)'에 기술한 것과 같이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구체화하고, 사업주 예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한 '밀폐공간'*으로 한정 필요

* 안전보건규칙 제618~644조는 밀폐공간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위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제24호) 또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부 자료*의 설명과 같이 ‘체온조절중추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고온 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업무’로 규정 필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7.9)

- (3) ‘1년 이내에 3명 이상’ 여부 결정은 산재보험법상 요양승인된 질병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함
- (4)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사망자’에 속하는 질병 범위는 동 제정안 [별표 1]의 질병 목록으로 한정 필요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u>제2조(직업성 질병자)</u>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u>제2조(직업성 질병자) ①-----</u> ----- ----- 질병에 걸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u>②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요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u>
<u><신 설></u>	<u>제2조의2(중대산업재해 사망자)</u>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에 포함되는 질병 사망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 · 유기주석 · 메틸브로마이드 ·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u>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 중독</u>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u>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 통 등의 급성 중독</u>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u>한</u>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한기’, ‘고열’ 등 삭제 및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p><u>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u></p> <p>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p> <p>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p> <p>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 · 크실렌 · 스티렌 · 시클로헥산 · 노말헥산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p> <p>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p> <p>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p> <p>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p> <p>10. 불화수소 · 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 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p> <p>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애, 자율신경계장애 등 급성 중독</p> <p>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p> <p>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p> <p>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두통, 현기증, 구역, 흥분상태 등 삭제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점막자극 증상, 두근거림, 호흡곤란 삭제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등 삭제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삭제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 질병 종류 구체화 필요 <삭제> <p>13. ----- -----</p>
--	---

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 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 전파성 질병<단서 신설>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애,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밀폐공간으로 한한다) -----
22. -----
23. 체온조절중추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고온 장소에서 장시간 -----

2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 3)

[시행령(안)]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 라. (생 략)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바. (생 략)

[별표 3]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1. ~ 2. (생 략)

3. 항만

가. (생 략)

나. 계류시설

-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 9. (생 략)

비고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가. 문제점

(1)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는 이미 개별법령에 따라 사망 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함

□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중대 재해처벌법과 동일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음

(2) 주유소 및 충전소의 사업특성 고려없이 공중이용시설 적용범위를 사업장 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

- 주유소 및 충전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대부분 임대형태로 운영되는 휴게음식점, 차량정비소, 편의점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장 면적 기준으로 판단 시 상기 임대공간이 모두 포함됨
- 또한 교외 또는 도심 외곽의 주유소, 충전소의 경우 실제 주유·충전하는 부지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유휴부지(주차장 등 기타용도 사용)가 있음
- 한편 충전소는 프로판, 부탄, 프로판과 부탄(겸업) 충전소로 구분되며, 프로판 충전소는 현행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음

(2) [별표 3]에 따른 계류시설은 「항만법」 상 정의를 차용하였으나, 일반 시민 등의 접근이 제한적인 시설까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남

- 선박 계류시설에 포함된 LPG 수입기지 및 제반시설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
- 또한 조선소 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안벽 등도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시설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동 법률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시행령 제정이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실내주차장, 갑문시설·배수펌프장, 개인 거주시설 등은 다중의 이용 빈도가 적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였음

나. 건의의견

(1) 주유소 및 충전소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삭제하거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함

주유소 및 충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나목에 따른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충전소는 자동차 충전사업으로 한정

(2) [별표 3]에 따른 계류시설의 범위에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 건조 관련 안벽 등 일반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시설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제3조(공중이용시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u>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u>	제3조(공중이용시설) (생 략) 4.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가목의 <u>주유소 및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사업으로 한정한다)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u>
[별표 3]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비고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4)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단서 신설>	[별표 3]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비고 7. ----- ----- 다만,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 건조 관련 안벽 등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시설은 제외한다.

3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안 제4조)

[시행령(안)]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생략)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생략)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가. 문제점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느 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발생이 우려됨

- 제3호의 '충실하게', 제4호 및 제8호의 '적정한'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적절치 않음
 - 안전관계법령 등 우리나라의 법률 중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충실하게'라는 문언을 둔 법률을 찾기 어려움
 - '적정한' 역시 '충실하게'와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어느 수준(범위)까지 예산을 확보·집행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음
 - 도급, 용역, 위탁 시도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용과 수행기간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각호에 규정된 의무들이 사업과 사업장 중 어느 단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함
 - 제1호의 '사업 및 각 사업장', 그 외는 '사업 또는 각 사업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인지, 각 사업장마다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특히, 제1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 및 사업장이 통합된 전체 기업단위 차원에서 세우면 되는데, 각 사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혼동스러움
- 제6호 및 제8호의 의무가 적용되는 종사자와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음
 - 종사자의 의견청취로 갈음되는 산안법 제64조의 안전보건협의체는 1차 수급인만 참석이 가능하고, 원청의 관리범위 고려 시 모든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의견 청취는 현실적으로 불가함

- 1차 수급인에게는 원청이 마련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하위 n차 수급인에게는 기준준수를 강제할 수 없음
 -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수사권 남용이 우려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별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법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 실제 최근 고용부의 사업장 감독결과를 보면,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해 대부분 '미흡'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어느 기업도 정부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 위반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큼
- (2) 전문인력 배치규정은 현행 법률들과 상충되고, 전담조직 기준은 산업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
- 제3호의 전문인력 배치는 현행 산안법 및 기특법과 상충됨에도 기존 법률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행 기특법*은 산안법상의 산업보건의 선임규정을 면제하고 있으나, 가목은 산안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기특법 제28조(기업의 자율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 현행 산안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나목의 전문인력 겸직 규정은 위탁을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제5호의 전담조직 설치 기준이 중소규모 업체가 많은 건설업종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 순위 51~200위 건설회사는 상시근로자(공사현장 포함)가 평균 204명인 중소규모* 업체에 해당되며, 업종특성상 본사도 최소한의 필요인력(경리·사무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 20.12.31 기준) 시공능력평가 51위~200위 1社당 상시근로자수 : 204명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은 시공능력 순위로는 50위 이내 정도의 건설회사임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수와 시공능력 순위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대다수가 일용직이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현행 산안법령과 유사한 의무에 대한 갈음규정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실행의 적정 여부를 사고발생 이후에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이 아님

- 제4호, 제8호의 의무내용은 산안법 제14조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61조 적격업체 선정 의무와 유사하나, 갈음규정이 없음
-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따른 집행”은 대표이사가 예산을 이사회 보고하고,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검토하여 승인할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과 절차도 현행 도급인의 적격업체 선정 의무와 고용부 매뉴얼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맡겼다면, 의무를 이 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의 적정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가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만큼,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한지, 제대로 실행 되고 있는지 정부가 사전에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 예 방에 더 효과적임
- (4) 현행 산안법상 동일·유사한 내용을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하면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등 형벌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짐
- 경영책임자 의무로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은 산안법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로, 위법의 정도가 다르지 않음
 - 산안법상 처벌이 없거나, 과태료 수준의 위법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 역형 부과는 매우 과도하며, 가중처벌의 규범적 근거로 매우 미약함
 - 제2호(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8호(도급, 위탁, 용역 시 평가기준 및 절차마련)는 산안법상 벌칙이 없고, 제3호(전문인력 배치 및 직무수행)는 벌칙이 과 태료임
 - 제6호를 갈음하는 산안위, 안전보건협의체 위반도 벌칙이 과태료와 벌금 정도임

나. 건의 의견

- (1)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표현인 ‘충실하게’, ‘적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각 호에 규정된 의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제3호는 전문인력이 산안법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
 - 제1호의 ‘사업 및 각 사업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수정, 제6호와 제8호의 적용대상은 1차 수급인으로 한정
- (2) 기존 산안법 및 기특법상의 전문인력 규정(산업보건의 선임 면제, 전문기관 위탁 허용)이 준용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해야 함
- (3)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직 설치 기준을 완화(시공능력 50위 이내)하고, 시공능력 순위로만 전담조직을 두도록 수정해야 함
- (4) 제4호의 “적정한 예산”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하고,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은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함
- (5)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제5호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 (6)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적정 여부를 정부가 사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p> <p>2. (생략)</p> <p>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p> <p>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p> <p>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i>〈단서 신설〉</i></p> <p>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i>〈단서 신설〉</i></p> <p>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p>	<p>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 -----.</p> <p>1. 사업 또는 사업장의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해당 조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p> <p>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 -----</p> <p>나. ----- ----- ----- <i>(「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간 위탁으로 갈음할 수 있다.)</i></p> <p>4. -----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예산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이사회 보고·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5. -----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p>

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 7. (생략)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단서 신설>

가. ~ 나. (생략)

〈신설〉

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50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

확보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 나. (삭제)

② 경영책임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의 적정여부 평가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안)]

제5조(증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문제점

(1)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시행령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범위와 구체적 의무내용을 알 수 없고, 감독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안)에 전혀 규정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범위를 예측할 수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상기 문언만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만 좁게 보더라도 30개*가 넘고, 안전·보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되는지 모호함

* 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계법, 광산안전관계법, 철도·항공안전관계법, 원자력안전 관계법, 전기안전관계법, 가스안전관계법, 건설안전관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승강기안전관계법, 감염병예방관계법, 환경관계법, 국방안전관계법, 재난관리관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연구실안전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지켜야 할 의무내용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면 사실상 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감독기관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예상됨

○ 정부는 위임근거가 없어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의 적용을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 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 수사기관이 기업이 모르는 각종 법령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수사 및 처벌 가능

○ 범죄의 구성요건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될 경우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감독관이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됨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안법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점검 위탁과 법 집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제2항제1호의 단서인 점검위탁은 고용부가 지정한 전문기관만 할 수 있는데, 산안법 이외 법령에 대한 점검까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점검을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할 수 없음
 - 고용부 지정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산안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인력구성 상 타 법까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함
-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담당하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안법 이외 법령까지 조사·수사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많은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안법을 제외한 타 부처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전문성이 없음
 - 주무부처도 아니며, 그간 해당 법률에 대한 수사경험도 없는 고용부 감독관이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감독기관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나. 건의의견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산안법으로 특정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생략) 1. ~ 3. (생략)</p>	<p>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 ----- ----- 「<u>산업안전보건법</u>」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안 제6조, 제8조)

[시행령(안)]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가. 문제점

(1) 법 위반 여부 확정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며, 실효성도 없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 무죄선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영자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책임(벌칙성 성격)을 묻는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함
- 법 위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수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유죄 확정시에만 형사책임과 교육수강을 강제하는 현행법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가혹함
 - 현행 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매번 동일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

(2) 교육비 부담규정은 시행령 위임사항이 아니며, 20시간의 교육과 비용까지 경영책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친 제재임

-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교육 이수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임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20시간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함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이 6시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시간이 지나치게 많음
- 교육수강 대상에게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 산안법 제174조에 따른 수강명령도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나. 건의의견

- (1)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은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될 수 있도록 교육수강대상 규정을 신설해야 함
- (2) 교육비 부담규정(제8조)은 삭제하고, 교육시간(제6조제2항)은 6시간으로 완화 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신 설〉	<u>제0조(교육수강 대상)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형이 확정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u>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현행과 같음)</u> 1. ~ 3. (현행과 같음)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u>20시간의</u>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u>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생 략)</u> 1. ~ 3. (생 략) ② ----- <u>6시간의</u> -----.
<u>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u>	〈삭 제〉

6 원료 ·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안 제10조)

[시행령(안)]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 가. ~ 다. (생 략)
4. (생 략)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가. 문제점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느 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음

- 제1항제1호의 ‘적정 규모’ 및 제1호, 제2호의 ‘적정한’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적절치 않음
 - 안전관계법령 등 우리나라의 법률 중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적정 규모’라는 문언을 둔 법률은 없음
 - ‘적정한’ 역시 ‘적정 규모’와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어느 수준(범위) 까지 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음
- ‘관계 법령’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배치·확인하고 예산을 편성·검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시행령(안) 제4조제3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관련 전문인력이 산안법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별표 5] 제12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이라는 포괄조항이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음
 - 제1호~제11호는 특정 법령에 따른 물질로 한정하여 경영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2호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원료 또는 제조물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2)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수사권 남용이 우려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별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법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 위반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큼

나. 건의의견

- (1) 형사처벌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표현인 '적정 규모', '적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은 [별표 5]에서 규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 (2) 제1항제2호의 "적정한 예산"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해야 함
- (3) [별표 5]의 '원료 또는 제조물'의 범위는 법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제12호의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p> <p>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p>	<p>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생략)</p> <p>1.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할 것</p> <p>2.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에 따른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예산이 -----</p>
<p>[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제10조제1항제3호 관련)</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p>	<p>[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제10조제1항제3호 관련)</p> <p>1. ~ 11. (생략)</p> <p>12. <삭 제></p>

[시행령(안)]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가. 문제점

(1)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내용이 불명확하여 시행령만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려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안)에 전혀 규정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범위를 예측할 수 없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상기 문언만으로는 적용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지켜야 할 의무내용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면 사실상 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계 법령’이 혼용되어 규정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움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계 법령’이 다른 법률을 의미하는지, ‘관계 법령’은 시행령(안) 제10조의 ‘관계 법령’과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시행령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 수사기관이 명확한 기준 없이 법 위반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함
- (2)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령’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도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나. 건의의견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령’은 [별표 5]에 규정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으로 특정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p>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을 말한다.</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에 ----- ----- ----- ----- . -----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에 ----- ----- ----- ----- 2.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법령에 ----- ----- ----- -----

8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안 제14조)

[시행령(안)]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 4.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가.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공표대상이 산안법과 중복됨
 - 산안법상 공표대상이 ①연간 2명 이상 발생, ②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어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하여도 동일 사망건은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각각 공표됨

나. 건의의견

- 동일한 중대재해로 산안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1항 후단에 단서규정을 마련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단서 신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p> <p>-----</p> <p>----- . 다만, 동일한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 ③ (생 략)</p>

[시행령(안)]

(부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가. 문제점

(1) 정부의 시행령 입법 지연 상황과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 의무가 적용되는 시행령 시행일을 내년 1.27일로 규정함

시행령 제정·공포(10월 예상) 후 법 시행('22.1.27)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기업은 법 시행일 전 법 준수가 물리적으로 불가함

- 자체적인 역량 부족으로 외부기관에 점검 위탁을 맡겨야 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51,678개('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이나, 위탁 가능한 안전·보건전문기관은 현재 192개에 불과함

(2) 정기적 의무내용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정기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경우는 법 시행일 이후라도 해당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반기 1회 이상으로 규정한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재해발생 보고 등 절차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점검 결과보고의 경우는 법 시행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님

(3)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법 시행일에 맞춰 경영책임자 의무준수를 적용하고,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 처벌임

- 법 시행일은 '22.1.27일이며, 경영책임자 의무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데, 의무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은 채, 법 시행일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나. 건의의견

- 경영책임자 의무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 월까지는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사업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특례)</p> <p><u>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7.26일까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3.1.26일까지 이 영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최초로</u> <u>이행하여야 한다.</u></p>

10 경영책임자등 정의(법 제2조제9호)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1) 법률 내용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준하여”의 의미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모호한 표현으로,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를 “사업대표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개념과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 안전보건 분야에 한정해서 권한과 책임만 있으면 되는지 불명확함
- “또는” 문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모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지, 1인으로 특정하는지 불분명함
- 문언상 “또는”의 의미와 국회 입법취지와 달리 고용부는 선택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매우 혼동스러움
- 국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을 보면 “또는”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1명이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임

- 반면에 정부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됨

(2) 한편, 사업장 내 업종이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된 사업부가 존재하며, 각 사업부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사장, 전무 등)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부 단위로 경영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혼란스러움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동일할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나. 건의의견

(1)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범위(권한·책임) 내에서 사업대표는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u><신설></u>	<p>제0조(경영책임자등) ①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p> <p>②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한다.</p>

11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1) 재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모든 재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적절치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강도·범위 한정 없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경영책임자 역할로 부적절함
- 재해에는 경영책임자의 법 위반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미한 재해(찔림, 베임 등)와 산업재해 외에 자연재해, 교통재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과로·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등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재해들까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함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도 정형화되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시행령(안)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알 수 없으며, 처벌수위도 과도함

-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의무준수로 인정되는지 법률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시행령에도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준법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조차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경영책임자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법인대표)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동일하여, 법 체계상 의무이행이 혼란스러움

- 동일한 의무에 대해 산안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에 처하도록 함

나. 건의의견

- (1)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대상 재해범위는 법 제정 취지와 경영책임자 역할을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로 한정해야 하며,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함
-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내용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대책수립 내용을 보고받아 점검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신설〉	<p>제0조(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를 의미한다.</p>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내용을 보고받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p>

12 관계법령상 개선·시정 명령사항의 이행조치(법 제4조제1항제3호)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 (1) 법률 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음

'관계 법령'이 안전·보건 분야 법령에 한정되는지, 모든 국내 법령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음

- (2)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명확성의 원칙」과 「최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음

나. 건의의견

'관계 법령'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장 밀접한 법률인 산안법으로 한정해야 하며, 관련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신설〉	제0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의 명령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

1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1) 법률 내용만으로는 원청의 책임져야 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제3자에 대한 의무주체가 복수인 경우 구체적인 의무범위를 파악할 수 없음

도급, 용역, 위탁의 정의 규정이 없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원청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큼

(2) 법률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함에도 시행령(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법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됨

(3) 한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대한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누가, 어느 수준(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 관리자 · 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등

나. 건의의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的 의미를 명확히 하여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그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p><신설></p>	<p><u>제O조(중대산업재해 관련 도급, 용역, 위탁 등의 범위)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별표O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장소를 의미한다.</u></p> <p class="list-item-l1">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 class="list-item-l1">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을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인 경우</p> <p>② 법 제5조 단서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class="list-item-l1">1.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소에서 또는 그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p> <p class="list-item-l1">2.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소의 출입 또는 장비의 사용 등을 관리·통제하는 경우</p> <p class="list-item-l1">3.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이들의 업무수행 방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p> <p class="list-item-l1">4.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 가능한 경우</p>

[별표O]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시설·장소 및 장비(제O조 관련)

1. 시설 및 장소

- 가. 토사(土砂) 구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라.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마.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바.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사.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아.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자.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카.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타.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파.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 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거.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1)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 용단작업
 - 2)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3)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 용단작업
- 너.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 삽수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더.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러.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머.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버.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 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어.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2. 장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러기
-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아. 고소(高所) 작업대
- 자. 곤돌라

14 경영책임자등의 책임범위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까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산업재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부여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기업의 안전규정 미준수 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부주의 행동이 중첩되어 발생함
-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규제방식으로는 중대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음

나. 건의의견

-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면한다”는 면책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신설〉	<u>제0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책임범위)</u>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6조에 따른 처벌을 면한다.

1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법 제16조)

시행령(안)] 없음

가. 문제점

(1)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가 미숙한 것이 현실임

최근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및 경영유지가 버거운 상황이나 안전관리 강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법령 준수가 불가능함

(2)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설팅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민간기업에 의한 컨설팅도 있으나 현장 안전관리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사업장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움

또한 비용 부담이 크나 업체별 기준과 견적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장 애로사항

-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업체마다 상이하나 상대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전문기관 선정 시 어려움을 겪음
- 민간업체 컨설팅을 받아도 정부 기준을 충족하고 감독 시 법 준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려움

(3) 안전·보건관리자를 회사 내부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 전문기관에게 안전·보건관리 위탁이 가능하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함

나. 건의의견

- (1)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현장 컨설팅 및 지도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함

<참고> 제정(안) 및 수정(안)

제정(안)	수정(안)
〈신설〉	<p><u>제0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u> <u>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지도</u> <u>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u> <p><u>②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